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2가단50547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

담당변호사 서상원

변론 종결2022. 8. 24.

판결 선고2022. 9. 7.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265,651원 및 그 중 48,895,686원에 대하여 2021. 12. 24.부터 2021. 12. 31.까지는 연 10%, 2022. 1. 1.부터 2022. 4. 1.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피고 C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2021. 6. 3. 체결된 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특허청 D일자 접수 E로 마친 권리전부 이전등록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으로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 2) 원고는 2020. 4. 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가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보증인 피고 A, 보증금액 49,500,000원, 보증기한 2025. 3. 31.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관련 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4) 피고 A는 채무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21. 12. 2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F 주식회사에게 49,681,726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대위변제금 중 786,040원을 회수하여 2021. 12. 24. 현재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는 49,265,651원이고, 그 중 원금은 48,895,686원이며, 지연손해금률은 2021. 12. 31.까지는 연 10%, 2022. 1. 1.부터는 연 8%이다.

나. 특허권 양도계약 등

1) 피고 A는 2021. 5. 27.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A의 2021. 5. 31. 현재의 제품, 시설, 장비, 집기 및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 등 자산 일체를 93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이라 한다).

2) 피고 A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 체결 후 자산과 재고에 대한 실사를 거쳐 자산매매대금을 770,000,000원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특허권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2021. 5. 27. 피고 A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증이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3) 소외 회사는 피고 A에게 2021. 5. 28.부터 2021. 9. 6.까지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77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에 따라 특허청 D일자 접수 E로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권리전부 이전등록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특허권 이전등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의 구상금 49,265,651원 및 그 중 원금인 48,895,686원에 대하여 2021. 12. 24.부터 2021. 12.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2. 4. 1.까지는 연 8%의 각 약정 이율,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C와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특허권 이전등록을 마쳤는데, 피고 C는 피고 A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에 갈음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특허권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A가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각대상 자산 중 일부로 이 사건 특허권을 포함시킨 사실 및 그 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특허권을 소외 회사 대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이전하기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이 사건 특허권 이전등록이 마쳐지고, 소외 회사는 피고 A에게 약정 인수대금 전부를 지급한 사실은 모두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특허권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A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에 갈음하여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불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백규

별지